



2024년 1월

제258회 임시회

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김 해 시
(대중교통과)

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월 일

제출자 : 김해시장

1. 제안이유

-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민의 이동생활과 밀접한 공공재화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시설임
- 운영비절감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 선정 등 효율적·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「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의거 김해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조(목적)
- 「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- 「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직영 시 인건비, 청소장비비 등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유지관리가 어려움
- 따라서, 시설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업체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 위탁사무 내용

- 관리대상 : 김해시 동지역, 진영읍 버스승강장
- 규 모 : 버스정류소 890개소(승강장 556개소)
- 위탁기간 : 2024. 3. 1. ~ 2026. 2. 28.(2년)
- 소요예산 : 비예산(광고 게시권 부여)
- 위탁업무
 - 승강장의 청소, 관리, 보수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유지·관리
 - 광고의 수주 및 게시에 관한 사항
 - 기타 승강장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(손해보험 가입 등)

라. 적정성 검토

- 검토결과 : 적정
 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,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,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
- 적정성 검토 근거
 - 「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

마.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법

- 수탁자격
 - 김해시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자로서 광고대행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자
 -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능력, 시설, 장비, 인력, 기술 및 책임능력을 갖춘 자 등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평가기준
 - 정량적 평가 :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수행역량 등 평가(30점)
 - 정성적 평가 : 사업수행계획, 재정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(70점)
- 평가방법
 - 정량적평가 : 1차 담당부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
 - 정성적평가 : 2차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
- 수탁기관 선정 근거
 - 「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8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

바. 추진일정

- 2024. 2월 :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
- 2024. 3월 : 위·수탁 계약체결 및 위탁운영

3. 참고사항

-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현황 및 체계 1부.
-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붙임 1

대중교통 시설물 관리현황 및 체계

□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현황

구분	정류소	대중교통 이용편의 시설물			
		승강장	표지판	대기용 의자	BIT
계	1,496	814	556	946	708
동지역	710	479	236	566	461
진영읍	180	77	92	100	67
면지역	606	258	228	280	180

□ 승강장 유지관리 체계

구분	승강장(개)	관 리 체 계
동지역, 진영읍	556	○ 유지관리 협약(민간위탁) : 2년간 ※ 읍,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관리
면지역	258	○ 市, 면 행정복지센터 공동관리 (현장 밀착형 모니터링)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ga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d9e1f2;">면 마을대표 운수업체</div> ➤➤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d9e1f2;">모니터링</div> ➤➤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d9e1f2;">시 현장점검 실시</div> </div>

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, 기간, 사용료,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3항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

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

시장은 제4호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8.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의회의 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(재위탁을 포함한다)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·도지사의 승인을,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국가·도 보조금 지원 사무를 재위탁·재계약하는 경우
2. 청소, 주차장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제7조(민간위탁 동의안)

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

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
2.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
4.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,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김해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9조(유지관리)

관리부서의 장은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버스 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다.